

$$1505 + 25(2 - 1) \cdot 2(1) \cdot 2$$

b-1

190mm x 260mm 일색 용지 2kg 60g/m²
4-40-41 1986. 4. 8.

제 목 : 차별 개재

1. 서울특별시 지방연구회 공무원 승급승진 규정 개정안을

시보에 개재 벌령한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1부. 표.

(제3안)

제 1부 : 244장

제 목 : 훈령 벌령

1. 일자 01300-99 (91. 5. 13.) 호와 발행일.

2. 서울특별시 지방연구회 공무원 승급승진 규정 개정안을

시보에 개재 벌령하였으니 시행에 차오 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1부. 표.

b - 1

서울특별시자영연구회공무원승급심사규정증명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1년 5월 20일

서울특별시장 9·4·원

서울특별시 훈령 제3/1호

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(이하 "연구관"이라 한다)의 승급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2조(위원회설치)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국장, 보건사회국장, 환경복지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내부국인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과보임계장이 된다

제 6조 중 "보건환경연구소장" 을 "보건환경연구원장" 으로 하고, "해당위원회" 를 "위원회" 로 한다

제10조 중 "각 위원장" 을 "위원장" 으로 한다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

〈별표1〉

승급심사에의하여 승급하는 호봉

연 구 관				
6호봉에서 7호봉으로				
· 10	"	11	"	
· 14	"	15	"	
· 18	"	19	"	
· 22	"	23	"	
· 26	"	27	"	승급할 때

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

〈별표2〉

평정자, 확인자

구 분	평정대상	원 장	부 장	과 장	평연구관
평정자	보건사회국장	원 장	부 장	부 장	
확인자	부 시 장	부시장	원 장	원 장	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중 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장” 을 각각 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” 으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의 1. 심사대상자란중 “대상기관” 을 “대상기간” 으로
“연구관, 연구사 승급심사위원회” 을 “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
승급심사위원회” 으로 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 울 특 별 시

인사 01300-91

731-6222

1991. 5. 13

수신 기획관리실장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개정요구

1.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일부를 불임과 같이 개정
요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1. 개정의유 및 주요개정 내용.

2.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개정(안) 1부. 끝.

내무국장 2/8/91

내 무 국 장

1991. 5. 17.	39K	6-6
--------------	-----	-----